

青少年犯罪의 原因과 對策에 관한 研究

임명순*

◇ 목 차 ◇

-
- I. 序
 - II. 青少年 犯罪의 發生原因
 - III. 青少年 犯罪의 現況 및 分析
 - IV. 青少年犯罪의 對策
 - V. 要約 및 結論
- 참고문헌
ABSTRACT
-

I. 序

靑少年期는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의 內的·外的인 變化를 겪게 되며, 자기와 사회의 관련이나 사물의 견해, 사고방식 등을 양성하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시행착오가 많은 시기라고 정의한다.¹⁾

靑少年이 올바르게 성장해야만 그 나라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듯이 靑少年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1) Larry J. Siegel and Joseph J. senna,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 west publishing company), 1994, p.15.

문제란 現代社會相의 반영으로써 그들이 脫線行爲나 破壞的인 反抗的行爲 그리고 道德性의喪失 등은 國家와 民族의 장래를 위하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青少年犯罪의 문제는 量의인 증가현상과 더불어 質의으로도 集團化, 凶暴化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이다.²⁾

青少年犯罪는 그들이 未成年者로서 자신들이 행한 行爲에 대하여 責任을 질만한 능력이 없고, 범죄의 동기가 단순하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순수성을 고려해 볼 때 教育을 통하여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등의 특성을 아울러 갖는데, 그렇기 때문에 成人犯罪와는 달리 취급하여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처벌하기 보다 教化·矯正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본다.³⁾

사실 青少年 자체는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過渡期的 상태로서 발달단계자체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배제할 수 없는 시기이다. 즉, 身體的인 변화와 함께 자아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전망, 자율성과 독립심에 대한 기대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의 다양성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그 시기의 모든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일 것이다.

따라서 青少年을 단순하게 非行行爲者로서만 간주하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의 요인들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被害者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화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性暴力 事態의 피해자로 밝혀진 대부분의 青少年들이 缺損家庭이거나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지도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능적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보호나 관심의 손길이 뻗쳐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青少年 犯罪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동시에 犯罪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犯罪에 대하여 기존의 刑事制裁가 青少年 犯罪의 대책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改善方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통계를 분석하였다.

2) 김기두, “소년범죄의 예방과 선도”, 청소년범죄연구(1), 법무부, 1992. p.7.

3) 이해진, “少年犯罪處理의 實態” 대한변호사학회지, 1991, p.78.

II. 青少年犯罪의 發生原因

1. 犯罪의 個人環境的 原因

1) 情神心理的 原因

Lombroso가 犯罪者에 관한 직접적인 觀察·統計의 研究에 의하여 犯罪者가 어떤 個人的 素因을 原因으로 하여 發生한다는 것을 實證的으로 提示하고, 다시 이를 理論的·體系的으로 發展시켰는데, 그는 犯罪者의 대부분은 出生하면서부터 犯罪者라고 보고 이를 生來犯人(angeborener Vervrecher, born criminal)이라고 하였다.⁴⁾ 그러나 그가 시도한 研究가一般的으로 失敗로 判明된 후에도 그 뒤를 이어 비슷한 形태의 犯罪原因論이 다른 學者에 의하여 主唱되기 시작하였는데 心理學者와 精神病學者들의 理論이 바로 그것이다.⁵⁾

現在 犯罪의 遺傳性에 대하여 最近의 刑事學은 이를 부정하려는 傾向이 있다. 美國의 刑事學者 Gillin은 「犯罪는 그 自體로서는 遺傳하지 않는다. 犯罪는 하나의 社會的 現象으로서 個人的 身體的 및 精神的 性格에 作用하는 環境과의 結合으로 發生하는 것이다. 이 人格의 일부는 물론 先祖로부터 遺傳된 生物學的 性格의 結果이기는 하나, 犯罪가 하나의 生物學的 性格 單位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⁶⁾

일반적으로 青少年犯罪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성격이상은 意志薄弱性이라는 점에서 學者들 간에 거의 의견이 일치한다.

즉, 意志薄弱한 少年은 持續力이 없고, 被影響力이 강하며, 誘惑에 빠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한번 非行化되면 좀처럼 생생하기 어려워 설령 更生하려고 생각하더라도 지속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곧 非行을 하게 마련이라고 한다.⁷⁾

2) 身體的 原因

身體的 缺陷은 遺傳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출생 전의 條件, 難產, 그리고 출산후의 條件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身體的 缺陷이 犯罪性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하여는 통계, 기타 자료 등에 명확히 정리되

4) 鄭榮錫, “韓國 青少年非行의 現況과 그 對策”, 刑事法의 諸問題, 法文社, 1982, p.332.

5) 金箕斗, “少年犯罪의豫防과 善導”, 青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2, p.7.

6) 鄭榮錫, 前揭論文, pp.333~334.

7) 鄭榮錫, 前揭論文, p.337.

어 있지는 아니하다.

다만 「健全한 情神은 健全한 身體에 깃든다」 (Sound mind in sound body)라는 格言도 있듯이 身體에 어떠한 缺陷이 있는 者는 社會生活上 普通人보다 犯罪 내지 犯行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은 용이하게 推測할 수 있고, 더욱 身體的 缺陷으로 인하여 社會生活上 및 經濟生活上의 影響이 결국 非行의 要因이 될 수 있다.⁸⁾

2. 犯罪의 社會環境的 原因

1) 家庭的 原因

가장은 青少年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接觸하는 최초의 社會集團이며 青少年의 일상생활과 관심의 터전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家庭은 한 개인에게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을 가르치고 道德과 秩序, 規律 등을 가르치며 무엇보다 의미 있는 人間關係를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학습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성격이나 능력의 핵심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재력이며 青少年期에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일깨우는데 필요한 자기확신이나 정서적 안정을 충족시켜주는 곳 역시 가정이기 때문이다.

家庭이 精神的・肉體的으로 미성숙한 青少年期에 그를 잘 保護・育成하고 더욱 건전한 정조를 키워 社會生活의 適應性을 학습하는 장소로서 작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사회집단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家庭은 犯罪에 대하여 潛在的으로 매우 효과적인 抑制機構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면서, 青少年에게 情緒的으로 安定感을 維持하고 自信感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해 준다.

그렇지만 核家族化와 女性의 社會活動增加로 인해 유아기부터 가족의 통합된 역할이 점차 약화되어 심신의 건강이 조화되지 못하고 부모로서 성장과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價值判斷에 필요한 情緒的 經驗 및 態度를 길러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青少年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유혹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문화유산의 전달기능에 있어서도 核家族化로 인해 美風良俗들이 사라져가 青少年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父母不和, 離婚, 家族間 不和, 愛情缺乏, 對話斷絕 등은 青少年 問題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

8) 鄭榮錫, 刑事政策, 法文社, 1997, p.91.

青少年犯罪를 誘發하는 家庭的 原因에 대해서 알아보자.

(1) 缺損家庭

缺損家庭(the broken home)이란 兩親 모두나 한 사람이 死別·離婚·別居·遺棄·失踪·受刑·長期不在 등으로 자녀를 직접 보호하지 못하는 가정, 즉 缺損家庭 문제의 해결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2) 貧困家庭

경제적 사정은 사람의 人格形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범죄를 誘發하는 동기가 된다. 貧困家庭(the poor family) 그 자체가 犯罪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家庭의 貧困狀態가 가져오는 間接的 作用, 예컨대 住居難 및 이와 관련되는 열악한 近親關係, 兩親이 教唆하여 竊盜·乞食 등을 하게 되는 경우, 貧困을 招來한 父의 無能·無自力·알콜中毒·生活無節制·葛藤 그리고 貧困으로 인한 家庭關係의 障碍, 規律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등을 말한다.

(3) 不道德家庭

不道德家庭(immoral family) 또는 非行家庭(delinquent family)이란 社會不適應者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보기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는 不道德家庭도 넓게 보면 기능적 缺損家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家庭에 있는 少年이 정서적으로 不安定하고 家庭 자체의 상황이 不安定하기 때문에 犯罪나 非行이라는 下層文化에 익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葛藤家庭

葛藤家庭(conflict family)이란 家族間(특히 兩親間)에 感情, 理解, 價值觀 등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여 人間關係의 융화가 缺如된 家庭을 말한다.⁹⁾

家族間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直接·間接의을 青少年犯罪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9) 鄭榮錫, · 申洋均, 刑事政策, 法文社, 1997, p.146.

2) 教育的 原因

많은 青少年들이 학교를 進學, 就業을 준비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大學入試爲主의 教育方式으로 인한 注入爲主의 教育은 個別的 特性을 무시하고 있어, 학교가 입시준비과정으로서의 역할은 담당할 망정, 인간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특별히 생활지도에 관심을 갖게 하기엔 역부족인 듯하다.

(1) 一般的 環境으로서의 學校教育

일반적 환경, 즉 문화적 환경으로서의 教育制度 특히 學校教育이 国민이 犯罪性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서는 學校教育이 犯罪를 抑制하는 方向으로 作用한다는 견해(낙관론)와 犯罪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비관론)가 대립되어 있다.¹⁰⁾

前者는 「敎育은 倫理化한다」는 命題를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개인의 社會化를 組織的・體系的・段階的으로 행하는 장으로서의 學校의 役割은 個人으로 하여금 社會構成員으로서 社會生活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하여 學校教育이 犯罪를 抑制하는 作用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後者는 특히 근대의 學校敎育의 기술적 편향성을 지적하여 犯罪를 促進하는 작용을 할 수 밖에 없으며, 한편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犯罪率이 높은 것은 교육자체가 가지는 犯罪抑制要索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다른 環境的 要因이나 소질에서 그 原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앞의 犯罪統計에서 본바와 같이 青少年犯罪者の 教育程度別에서의 현상을 일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을 감안하더라도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정한 犯罪, 특히 화이트칼라 犯罪의 경우에는 상당한 知能과 知識을 요구하므로 敎育이 오히려 범죄를 促進하는 效果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傳統的인 犯罪에서는 이러한 연관성도 인정하고 있다.¹¹⁾

(2) 個人環境으로서의 學校敎育

學校敎育이 個人的 環境, 즉 訓育的 環境으로서 개인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10) 鄭榮錫·申洋均, 전개서, p.155.

11) 전체 국민의 학력구성비에 대하여 1980년과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초졸 이하가 55.3%에서 33.7%로 중졸이 8.1%에서 18.9%로 고졸이 18.9%에서 33.2%로 대졸이 7.7%에서 14.2%로 각기 변화되었다(통계청, 1992년).

특히 學齡期의 兒童은 취학하면서 社會性의 발달이 적은 家庭이라는 혈연단체의 生活로부터 同年輩와의 共同體 관계로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사회의 일원으로 된다. 그리고 學校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없이 教師, 學友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理念과 行動樣式를 습득하게 된다. 다만 학교에서 습득한 것이 장래의 犯罪行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는 犯罪學에서 증명하기 곤란한 問題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래 學校教育과 犯罪의 關係에 대해서는 주로 犯罪者의 成績과 學習態度가 問題로 되어 왔다. 말하자면 학교에의 적응 여부는 非行과 關係되는 것이고, 成績不良과 學業怠慢은 犯罪 내지 非行의 原因으로 된다고 한다.¹²⁾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少年鑑別所에서 受容對象少年을 대상으로 非行少年의 학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¹³⁾

그 統計에 따르면 鑑別對象少年 가운데 학교에 대해 否定的 態度를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增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공부하기가 싫기 때문이라는 學生의 비율이 상당한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學生이 정상적인 學校生活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學校의 사회화 기능과 犯罪統制機能을 거칠 또는 무시함으로써 犯罪나 非行에 대한 抵抗力이 약해지고 이탈자나 犯罪者와 접촉하는 機會가 그만큼 많아져 非行에의 길을 걷기 쉽게 된다.

3) 社會的 原因

(1) 文化環境과 犯罪

文化環境이란 한 나라의 國民이 가지는 倫理觀·宗教觀·風習·敎養過程·文明·技術的 發展의 程度 등을 말한다.¹⁴⁾

犯罪의 科學的 研究와 刑事政策의 진보에 따라 문화적 조건의 향상은 일종 범죄의豫防과 鎮壓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 文化環境은 犯罪의 促進의 方向으로도 抑制의 方向으로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중 어느 작용이 더 큰가는 一律的으로 논할 수 없고 각 時代·國家·民族·社會構造에 따라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12) 鄭榮錫·申洋均, 前揭書, p.159.

13) 鄭榮錫, 前揭書, p.140.

14) 鄭榮錫·申洋均, 前揭書, p.206.

(2) 自然環境과 犯罪

自然環境은 個人的·社會的 環境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보통 氣像·氣候·土地·風景 등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요소는 直接·間接의으로 그 지역주민의 犯罪性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 헬파흐(Hellpach) 아래 많은 學者들에 의하여 지적되어 왔다. 犯罪와 自然環境의 관계에서는 주로 氣象·氣候를 문제로 삼고 있다.¹⁵⁾

(3) 經濟的 環境과 犯罪

經濟的 環境은 社會的 環境의 한 요소로써 犯罪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여겨져 있기 때문에 종래 犯罪學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經濟的 環境과 犯罪의 關係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왔다.

(4) 情報化와 犯罪

새로운 情報를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쏟아지는 情報를 어떻게 걸러서 받아들이느냐가 더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青少年들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 민감하지만 그것을 판단하여 받아들이는데는 약한 특징이다. 예를 들어 성이 금기시 되어온 전체 사회분위기에 반해 알게 모르게 쏟아지는 性情報 를 어떻게 소화시키느냐는 그 사람의 性意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歪曲吸收될 위험도 있어 精神健康上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5) 價值觀混亂과 犯罪

쏟아지는 情報와 價值觀의 격차 속에서 청소년 자신의 예민한 감수성과 호기심은 청소년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여 자기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데 큰 곤란을 겪게 한다. 青少年뿐 아니라 既成世代조차 확고한 價值觀을 갖고 이를 青少年에게 심어줄 수 있는 자기확신을 갖지 못한 까닭에 青少年들을 國籍이 불분명하고 기준이 애매 모호한 가치관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결과에 이른다.

우리 사회의 歡樂風潮는 青少年에 대한 우려는 도외시한 채 청소년의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有害環境을 만연시켰으며 이는 青少年 非行을 더욱 부추기는 직접적인 자극요인이 되고 있다.

韓國青少年研究員에서는 有害施設 및 場所뿐 아니라 담배자판기, 마약류 등의 有害物

15) 기온이나 기후는 그 직접적인 영향도 문제가 되지만, 범죄성에 대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

品, 夜間徘徊, 집단패싸움, 性暴行 등을 포함하는 有害行動, 日本 有線放送, 淫亂비디오테이프, 夜談雜紙 등을 포함하는 有害한 정보환경에 이르기까지 有害環境의 범주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다.

III. 青少年犯罪의 現況 및 分析

1. 青少年 犯罪의 現況

1) 總犯罪 對備 青少年犯罪 構成現況

최근 5년간 青少年犯罪의 전체 발생규모는 <표 3-1>과 같다.

1993년에 일어난 총범죄 건수는 1,738,952명이고, 소년범죄 110,604명으로 6.4%로 나타났으며, 1994년에는 다소 감소한 108,342(6.5%)건이며, 1995년부터는 증가추세에 들어 104,244(6.9%)로 늘어났다. 증가추세는 지속되어 1996년 146,986(7.3%)건, 1997년 164,182(7.6%)건으로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3-1> 總犯罪 對備 青少年犯罪 構成현況

(단위:명)

| 구 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 총범죄 | 1,738,952 (112.9) | 1,660,973 (107.8) | 1,804,405 (117.1) | 2,018,196 (130.9) | 2,117,759 (121.8) |
| 소년범죄 | 110,604 (111.4) | 108,342 (109.1) | 124,244 (125.1) | 146,986 (148.0) | 164,182 (148.4) |
| 구성비율(%) | 6.4 | 6.5 | 6.9 | 7.3 | 7.6 |

주 :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백서 1993~1997년까지를 본인이 요약한 것임.

2) 犯罪類型別 추세

청소년범죄는 흔히 強力犯罪, 暴力犯罪, 財產犯罪, 交通犯罪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强力犯罪는 殺人, 强盜, 强姦, 放火 등 社會的 危害度가 심각한 범죄들을 포함한 犯罪類型이며, 暴力犯罪란 暴行·傷害·恐喝·脅迫·監禁·誘引 등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무력을 행사한 범죄들이며, 財產犯罪란 竊盜·橫領·背任·臟物詐欺 등과 같이 財產上의 利益을 목적으로 한 犯罪類型이다.

지난 5년간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에 暴力犯罪의 比重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1993년의 경우 전체 青少年犯罪에서 强力犯罪 4,622건, 暴力犯罪 40,380건, 財產犯 28,099건, 交通犯罪 21,457건 기타 16,006건으로 나타났다.

〈표 3-2〉 青少年 犯罪 類型別 現況

(단위:명)

| 구 分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 계 | | 110,604 | 108,342 | 124,244 | 146,986 | 164,182 |
| 강 력 범 | 소 계 | 4,662 | 6,101 | 4,349 | 4,566 | 5,653 |
| | 살 인 | 116 | 62 | 65 | 69 | 79 |
| | 강 도 | 2,762 | 3,464 | 2,684 | 2,840 | 3,651 |
| | 강 간 | 1,696 | 2,522 | 1,526 | 1,599 | 1,840 |
| | 방 화 | 88 | 53 | 74 | 58 | 83 |
| 폭 력 범 | 소 계 | 40,380 | 40,559 | 47,523 | 53,165 | 62,218 |
| | 폭행·상해 | 40,088 | 40,140 | 46,696 | 52,359 | 61,383 |
| | 공갈·협박 | 292 | 388 | 802 | 769 | 790 |
| | 감금·유인 등 | | 31 | 25 | 37 | 45 |
| 재 산 범 | 소 계 | 28,099 | 30,247 | 32,338 | 34,044 | 39,605 |
| | 절 도 | 25,428 | 26,841 | 28,616 | 29,936 | 35,177 |
| | 횡령·배임 | 684 | 921 | 1,056 | 955 | 993 |
| | 장 물 | 624 | 812 | 739 | 757 | 741 |
| | 사 기 | 1,363 | 1,673 | 1,927 | 2,396 | 2,694 |
| 교 통 사 범 | | 21,457 | 23,485 | 30,808 | 39,378 | 45,622 |
| 기 타 | | 16,006 | 7,950 | 9,226 | 15,833 | 11,084 |

- 주 : 1) 폭행·상해에는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이 포함되어 있음.
 2) 폭력범 중 기타는 체포와 감금, 협박,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포함.
 3) 강간에는 '94. 4.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포함되었음.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백서 1993~1997년까지를 본인이 요약한 것임.

3) 犯罪年齢別 現況

靑少年犯罪者의 年齡別 分布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향은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차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3년의 경우에는 18세~19세의 비율이 43.2%, 1994년에는 33.9%로 최근에 들수록 이들의 연령대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14세~15세는 1993년 전체의 21.1%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26.1%로 지난 5년간에 이들의 연령이 차지한 비율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6세~17세의 경우도 1993년 33.6% 이었으나, 1995년에는 36.8%로 약 3% 가량이 증가하였다.

범죄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특히 저연령층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犯罪年齢別 現況

(단위:명, %)

| 연도 | 소년범죄 자인원 | 14세미만 | | 14세~15세 | | 16세~17세 | | 18세~19세 | |
|-----|-------------|-------|-----|---------|------|---------|------|---------|------|
| |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 '93 | 110,604 | 2,307 | 2.1 | 23,290 | 21.1 | 37,176 | 33.6 | 47,831 | 43.2 |
| '94 | 108,342 | 3,000 | 2.8 | 25,424 | 23.5 | 37,418 | 34.5 | 42,500 | 39.2 |
| '95 | 124,244 | 2,551 | 2.1 | 32,352 | 26.0 | 45,707 | 36.8 | 43,634 | 35.1 |
| '96 | 146,986 | 4,660 | 3.2 | 378,084 | 25.9 | 53,130 | 36.1 | 51,112 | 34.8 |
| '97 | 164,182 | 4,093 | 2.5 | 42,786 | 26.1 | 61,622 | 37.5 | 55,681 | 33.9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백서 1993~1997년까지를 본인이 요약한 것임.

4) 青少年犯罪의 性別現況

性別로 나누었을 때 男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女子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 青少年犯罪 역시 成人犯罪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의 경우에 남자의 비율은 92.8%이고 여자는 7.2%로 남자가 10배 이상 여자들에 비해 青少年犯罪에 빠져드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우려되는 현상은 여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3년도의 경우 女子의 比率이 5.7%, 1995년도에 7.2%, 1997년도에는 8.4%로 女子들에 의한 青少年犯罪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男子 青少年犯罪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女子 青少年犯罪 比率은 높아지고 있다.

<표 3-4> 青少年 犯罪의 男女別現況

(단위:명, %)

| 연도 | 계 | 남 자 | | 여 자 | |
|-----|---------|---------|------|--------|-----|
| | 인 원 | 인 원 | 점유율 | 인 원 | 점유율 |
| '93 | 110,604 | 104,263 | 94.3 | 6,341 | 5.7 |
| '94 | 108,342 | 101,625 | 93.8 | 6,717 | 6.2 |
| '95 | 124,244 | 115,271 | 92.8 | 8,973 | 7.2 |
| '96 | 146,986 | 134,104 | 91.2 | 12,882 | 8.8 |
| '97 | 164,182 | 150,396 | 91.6 | 13,786 | 8.4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백서 1993~1997년까지를 본인이 요약한 것임.

5) 青少年 犯罪의 動機別 現況

青少年犯罪者의 犯行動機를 보면 偶發的 犯行이 1993년 23.4%, 1997년도 2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遊興費充當 등 利慾犯行이 1993년 9.8%에서 1997년 14.0%이고, 不注意가 1997년도 13.4%, 醉中(好奇心)이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靑少年 犯罪의 動機別 現況

(단위 : %)

| 연 도 | | '93 | '94 | '95 | '96 | '97 |
|-------------|--------|------------------|------------------|------------------|------------------|------------------|
| 계 | | 110,604 (100) | 108,342 (100) | 124,244 (100) | 146,986 (100) | 164,182 (100) |
| 이 용 | 소 계 | 10,840 (9.8) | 20,629 (1.8) | 22,122 (17.8) | 25,030 (17.0) | 22,985 (14.0) |
| | 생활비 | 1,651 (1.5) | 1,967 (1.8) | 1,691 (1.4) | 2,474 (1.7) | 1,947 (1.2) |
| | 유품비 | 7,464 (6.7) | 9,432 (8.7) | 9,155 (7.4) | 9,472 (6.4) | 8,686 (5.3) |
| | 허영·사치심 | 1,725 (1.6) | 1,638 (1.5) | 1,738 (1.4) | 2,472 (1.7) | 1,181 (0.7) |
| | 기타 | - | 7,592 (7.0) | 9,538 (7.7) | 11,613 (7.9) | 11,171 (6.8) |
| 사 행 심 | | 1,633 (1.5) | 1,036 (1.0) | 1,066 (0.9) | 1,383 (0.9) | 1,157 (0.7) |
| 원 한·분 노 | | 1,897 (1.7) | 1,756 (1.6) | 1,492 (1.2) | 1,870 (1.3) | 2,359 (1.4) |
| 취 중 (호 기 심) | | 7,284 (6.6) | 9,711 (9.0) | 12,346 (9.9) | 15,637 (10.6) | 15,057 (9.1) |
| 우 발 적 | | 25,877 (23.4) | 26,786 (24.7) | 30,813 (24.8) | 34,537 (23.5) | 35,956 (21.9) |
| 유 혹 | | 2,961 (2.7) | 1,251 (1.2) | 1,278 (1.0) | 1,596 (1.1) | 1,914 (1.2) |
| 가 정 불 화 | | 136 (0.1) | 135 (0.1) | 134 (0.1) | 153 (0.1) | 92 (0.06) |
| 부 주 의 | | - | 12,725 (11.7) | 16,366 (13.2) | 19,925 (13.6) | 22,035 (13.4) |
| 현 실 불 만 | | - | 973 (0.9) | 1,117 (0.9) | 1,693 (1.2) | 1,590 (1.0) |
| 기 타 | | 59,976 (54.2) | 33,340 (30.8) | 37,510 (30.2) | 44,162 (30.0) | 47,054 (28.7) |

주 : () 안은 점유율임.

※ 이 용난의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 외의 이용목적 범행임.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백서 1993~1997년까지를 본인이 요약한 것임.

6) 青少年 犯罪의 教育程度別 現況

〈표 3-6〉은 최근 5년간 青少年犯罪者의 교육정도별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그 동안 초등학교졸업 이하의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여 1993년에 3.5%이던 것이, 1997년에는 1.75에 불과하게 되었고, 대학교졸업의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여, 1993년에는 2.6%이던 것이 197년에는 5.4%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수준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청소년범죄자의 교육 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5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학교 재학 및 졸업자 28.8%,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 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 青少年 犯罪의 教育程度別 現況

(단위 : 명, %)

| 연도 | 계 | 불취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기타 |
|-----|------------------|--------------|----------------|------------------|------------------|----------------|------------------|
| '93 | 110,604 (100) | 164 (0.1) | 3,807 (3.4) | 34,097 (30.8) | 60,392 (54.6) | 2,905 (2.6) | 9,239 (8.4) |
| '94 | 108,342 (100) | 169 (0.2) | 3,187 (2.9) | 33,929 (31.3) | 61,108 (56.4) | 4,190 (3.9) | 5,759 (5.3) |
| '95 | 124,244 (100) | 177 (0.1) | 2,896 (2.3) | 39,480 (31.8) | 70,199 (56.5) | 5,458 (4.4) | 6,034 (4.9) |
| '96 | 146,986 (100) | 190 (0.1) | 2,718 (1.8) | 45,733 (31.1) | 82,880 (56.4) | 6,771 (4.6) | 8,694 (5.9) |
| '97 | 164,182 (100) | 171 (0.1) | 2,624 (1.6) | 47,287 (28.8) | 84,987 (51.8) | 8,852 (5.4) | 20,261 (12.3) |

주 : () 안은 점유율임.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백서 1993~1997년까지를 본인이 요약한 것임.

7) 青少年 犯罪者의 前科別現況

청소년범죄자 중 초범은 1993년 78.6%를 차지한 아래로 점차 그 비율이 낮아져 1997년 74.0%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범률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1997년도에 2범 이상 전과

자가 12.6%에 이르고 있다.

〈표 3-7〉 青少年 犯罪의 前科別 現況

(단위:명, %)

| 연도 | 계 | 초 범 | 전 과 | | | |
|-----|------------------|-------------------|------------------|------------------|-----------------|-----------------|
| | | | 소 계 | 1범 | 2범 | 3범 이상 |
| '93 | 110,604 (100) | 86,885 (78.6) | 23,719 (21.4) | 14,111 (12.8) | 5,468 (4.9) | 4,140 (3.7) |
| '94 | 108,342 (100) | 85,127 (78.6) | 23,215 (21.4) | 13,758 (12.7) | 5,792 (4.9) | 3,665 (3.4) |
| '95 | 124,244 (100) | 95,245 (76.7) | 28,999 (23.3) | 16,678 (13.4) | 6,774 (5.5) | 5,547 (4.5) |
| '96 | 146,986 (100) | 110,639 (75.3) | 36,347 (24.7) | 19,643 (13.4) | 8,508 (5.8) | 8,196 (5.6) |
| '97 | 164,182 (100) | 121,516 (74.0) | 42,666 (26.0) | 22,067 (13.4) | 10,148 (6.2) | 10,451 (6.4) |

주 : () 안은 점유율임.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백서 1993~1997년까지를 본인이 요약한 것임.

8) 青少年 共犯關係別 現況

1994년 42,508명으로 39.2%이었던 것이 1996년 68,097명으로 46.3%로써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青少年 犯罪者는 단독범이 1997년도 46.1%로 1996년도에 비해서 0.2%가 줄어들었고 공범관계에 있는 청소년범죄자 중에서는 학교동창이 23.7%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동네(고향)친구 10.6%, 군·직장동료 1.1%, 친·인척 0.7% 순으로 나타났다.

1994년 60.8%에서 1997년에는 49.7%로써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8〉 少年犯罪者 共犯關係 現況

(단위 : 명, %)

| 구분 연도 | 계 | 단독범 | 공 범 관 계 | | | | | | | | |
|----------|------------------|------------------|------------------|------------------|------------------|----------------|------------------|--------------|----------------|------------------|----------------|
| | | | 소계 | 학교 동창 | 동네 (고향) 친구 | 교도 소등 동료 | 친·인 척 | 애인 | 군· 직장 동료 | 기타 | 미상 |
| '94 | 108,342 (100) | 42,508 (39.2) | 62,710 (60.8) | 29,454 (27.2) | 16,531 (15.3) | 117 (0.1) | 1,198 (1.1) | 256 (0.2) | 2,450 (2.3) | 12,704 (11.7) | 3,124 (2.9) |
| '95 | 124,244 (100) | 51,382 (41.4) | 69,234 (55.7) | 33,361 (26.9) | 16,538 (13.3) | 113 (0.1) | 1,119 (0.9) | 251 (0.2) | 2,306 (1.9) | 15,546 (12.5) | 3,628 (2.9) |
| '96 | 146,986 (100) | 68,097 (46.3) | 73,224 (49.8) | 34,401 (23.4) | 16,917 (11.5) | 131 (0.01) | 1,155 (0.8) | 325 (0.2) | 2,055 (1.4) | 18,240 (12.4) | 5,665 (3.9) |
| '97 | 164,182 (100) | 75,622 (46.1) | 81,534 (49.7) | 38,907 (23.7) | 168 (0.1) | 1,191 (0.7) | 17,341 (10.6) | 294 (0.2) | 1,827 (1.1) | 21,806 (13.3) | 7,026 (4.3) |

주 : () 안은 점유율임, 대검찰청 전산실에서 자료작성이 가능하여 '94년도부터 신설하였음

자료 : 대검찰청, 범죄백서 1993~1997년까지를 본인이 요약한 것임.

9) 學生犯罪者의 類型別 現況

1993년과 1997년을 비교해 보면 殺人·强盜·强姦·放火·性暴力 등 强力犯罪는 1.8%에서 2.5%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고, 竊盜犯은 22.7%에서 20.5%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내고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 暴力犯은 35.2%에서 38.5% 증가하였다.

〈표 3-9〉 學生犯罪의 類型別 現況

(단위:명, %)

| 연도 | 계 | 폭력 범 | | | 절도 범 | | 강력 범 | | 기 타 | |
|-----|---------|--------|------|--------|------|-------|------|--------|------|-----|
| | | 인원 | 인원 | 점유율 | 인원 | 점유율 | 인원 | 점유율 | 인원 | 점유율 |
| '93 | 66,074 | 23,286 | 35.2 | 14,968 | 22.7 | 1,167 | 1.8 | 26,653 | 40.3 | |
| '94 | 69,611 | 25,143 | 36.1 | 17,307 | 24.9 | 1,730 | 2.5 | 25,431 | 36.5 | |
| '95 | 82,442 | 31,491 | 38.2 | 18,552 | 22.5 | 2,140 | 2.6 | 30,259 | 36.7 | |
| '96 | 91,750 | 33,071 | 36.0 | 19,575 | 21.3 | 2,163 | 2.4 | 36,941 | 40.3 | |
| '97 | 103,292 | 39,732 | 38.5 | 21,178 | 20.5 | 2,605 | 2.5 | 39,777 | 38.5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백서 1993~1997년까지를 본인이 요약한 것임.

2. 青少年 犯罪의 分析

1) 凶惡化

傷害·暴行·恐喝·暴力行爲 등 處罰에 관한 法律違反 등에 暴力犯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殺人·強盜·强姦·放火 등의 強力犯의 경우 强盜가 가장 많은 比率을 차지하여, 1993년 2,762명이었던 것이 1994년 3,464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후 다소 감소하다가 1997년 3,65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強力犯 가운데 强盜의 比率이 增加하고 있고 財產犯의 경우 竊盜가 가장 많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2) 累犯·常習犯

1993년 전과가 있는 少年犯의 수는 23,719명으로 전체 少年犯의 21.4%였던 것이 1997년에는 42,666명으로 26%로 나타났으며 재범률이 매년 증가추세를 타내고 있다.

3) 集團化

少年非行의 集團化傾向도 나타나고 있다. 단독으로 犯行을 한 경우보다 2인 이상이 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犯罪白書」에 따르면 전국 소년원에 입원 중인 보호소년 가운데 단독 또는 2인이 비행을 한 경우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에 반하여 5명 이상이 비행을 한 경우는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4) 犯罪年齡의 低下

少年犯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少年을 觸法少年(12歲 이상 14歲 미만), 年少少年(14歲 이상 6歲 미만), 中間少年(16歲 이상 18歲 미만) 그리고 年長少年(18歲 이상 20歲 미만)으로 나누고 있는데 實數나 人口比로 볼 때에는 年長少年이 가장 많지만, 增加 내지 減少率을 綜合的으로 살펴보면 年少少年이 가장 犯罪率이 높고 점차 少年率의 연령이 낮아지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IV. 青少年 犯罪의 對策

1. 現行 少年法의 問題點

19世紀 末 少年法院 設立 運動이 결실을 맺어 세계의 各國은 예외 없이 일반 刑事裁判 節次와 區別되는 별도 體系의 少年法制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青少年犯罪가 量的으로 增加할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 凶暴化되고 그 原因도 다양하게 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少年法制의 機能에 대한 實증적 분석을 행함으로써 各國은 少年法制 전반에 관한 反省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소년법상의 問題點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첫째, 현행 少年法은 年齡問題에 관하여 處分當時 少年이 2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同法 第2條). 그러나 現代社會는 教育의 發展 및 文明의 發達 등으로 青少年들의 成長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國家에서도 青少年의 상한 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른 法令에도 成年과 少年과의 區別年齡을 18세로 한 경우가 있다.¹⁶⁾

또한 對象少年의 하한연령 문제도 觸法少年의 增加趨勢에 비추어 12세 미만자라 하여 少年保護의 테두리 밖에 두는 것은 再考의 餘地가 있다.¹⁷⁾ 따라서 10세(獨逸), 또는 8세(英國)로 引下하거나 日本처럼 하한을 두지 않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다 適正한 少年事件의 處理를 위해서는 少年保護에 대한 特別한 學識이나 經驗이 있는 判事 중에서 指名하여 전문화시킴이 바람직하다. 또한 裁判部의 構成에 있어서도 判事單獨으로 審判하기보다는 獨逸이나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教養과 資格試驗을 거친陪審員을 그 구성의 하나로 하거나, 미국의 여러 州에서처럼 裁判을 補助하는 審判員制度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少年法은 제30조 항에서 非行少年에 대한 保護處分으로 일곱가지를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現行 少年審判의 實態는 保護者에게 少年을 맡기는 1號處分과, 少年院에 보내는 7號處分을 區分하는 作業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現行 少年法이 規定하고 있는 保護處分의 種類는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保護處分도

16) 生活保護法 第3條의 保護對象者, 兒童福祉法 第2條의 要保護者 등의 對象에서 각각 18세를 成年과 區別지우는 경우가 있다.

17) 金箕斗, “少年法上의 諸般問題點과 改善方向”, 青少年犯罪研究, 법무부, 1991, p.12.

制限의이므로, 立法論의으로 處遇의 個別化라고 하는 理念을 실현할 수 있도록 保護處分을 마련하는 것이 요망된다.¹⁸⁾

넷째, 少年保護事件에 대한 審理는 刑事節次와는 달리 法院이 職權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刑事訴訟法上의 諸原則은 거의 排除되고 있으므로, 少年에 대한 人權保障의 견지에서 비형식적이고 비대립적인 職權主義의 色彩가 강한 우리의 制度에 보다 適正한 절차의 法的 保障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要請은 審判段階에서 뿐만 아니라 搜查段階에서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少年的 身體拘束要件을 현행보다 強化·具體化할 것, 少年拘禁施設을 따로 設置할 것 등 課題가 남아 있다.

2. 司法制度에 있어 青少年犯罪對策¹⁹⁾

1) 檢察段階에서의 處遇

우리나라의 現行法制上 非行少年 중 觸法少年과 虐犯少年은 경찰서장이 이를 직접 관할 少年部에 送致할 수 있다(少年法 第3條 第2項). 青少年犯罪에 대해서는 先議權이 檢事에게 있으므로 青少年犯罪에 대한 起訴與否와 少年部送致與否는 전적으로 檢事が 결정한다.

靑少年犯罪에 대하여 各種의 處分을 행함에 있어서는 단지 犯罪事實이나 責任의 경증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少年法의 정신에 비추어 그 少年の 再社會화와 再犯防止를 고려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刑事處分을 科하는 것이 再犯防止에 기여하거나 法秩序의 방위를 위하여 불가결할 경우 이외에는 少年部送致를 原則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표 4-1>에 나타난 少年犯罪에 대한 檢찰관리내용과 같이 少年部送致率이 25%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檢찰단계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한 비율이 80%선에 이르며 그 중 기소율이 9.7% 내지 39.3%를 차지하고 있음은 總起訴率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나 少年保護의 情神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⁰⁾

18) 鄭榮錫·申洋均, 前揭論文, p.437.

19) 少年犯罪의 對策에 대한 分析은 法務研修院 발행의 1996年, 犯罪分析 統計資料를 引用하였다.

20) 檢事先議主義에 대한 批判으로서, 韓相鎭, “少年審判制度의 運用現況 및 改善方向”, 青少年犯罪研究 第1輯(法務部, 1983), 50面. 그리고 이하에서의 統計資料는 法務研修院 발행의 1996년 犯罪白書 統計資料를 引用하였다.

〈표 4-1〉 少年犯罪檢察處理內容構成比

| 區分 罪名 | 計 | 起訴 | | | 少年部 送致 | 不起訴 | |
|----------|------------------|------|------|------|-----------|------|------|
| | | 小計 | 求公判 | 求略式 | | 小計 | 起訴猶豫 |
| 1990 | 100 (105,364) | 36.9 | 15.7 | 21.2 | 13.6 | 49.5 | 32.1 |
| 1991 | 100 (102,324) | 39.3 | 15.8 | 23.5 | 10.9 | 49.8 | 33.2 |
| 1992 | 100 (99,179) | 32.7 | 9.6 | 23.1 | 16.7 | 50.6 | 34.6 |
| 1993 | 100 (110,453) | 29.7 | 10.5 | 19.1 | 21.5 | 48.8 | 35.0 |
| 1994 | 100 (108,221) | 38.0 | 16.9 | 21.1 | 9.8 | 52.2 | 40.1 |
| 1995 | 100 (124,244) | 37.1 | 15.2 | 21.9 | 10.3 | 52.6 | 42.2 |

註 : 1. 犯罪分析, 법무부연수원, 1996.

2. ()은 總處理人員

3. 裁判段階에서의 處遇

1) 少年刑罰 및 保安處分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재판단계에서 원칙적으로 형법 및 사회보호법상의 제제 수단인 형벌 및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즉, 1988년 12월 31일에 改正公布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소년법에 의하면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재사회효과가 전혀 없는 사형과 무기형을 과할 수 없도록 하고(소년법 제59조) 自由刑에 있어서 재사회화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제도를 두며(同法 第60條 1項), 短期 自由刑의 폐해를 피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환형처분(代替自由刑)을 금지하고 (同法第62조), 自由刑의 집행에 있어서 소년에 대한 교정처우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성인과 분리토록 하며(동법 제63조), 개선의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緩和하고 (法 제65조, 제66조) 확인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범죄소년에 대한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

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宣告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同法 제67조) 등이 그것이다²¹⁾

1981년 이래 시행되고 있는 社會保護法에 의한 보호감호와 治療監護 등 保安處分은 성인과 소년을 막론하고 精神狀態나 중독 또는 상습성으로 인하여 재범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사회화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 경우에도 소년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을 통한 再犯防止의 관점보다는 改善과 治療를 통하여 재사회화한다는 관점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²²⁾

2) 少年保護處分

우리나라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된 이래 수차의 개정을 거쳤는데²³⁾ 현행 少年法에 의하면 비행소년 중 범죄소년은 檢事先義를 거쳐 少年部에 송치되고 觸法少年과 虐犯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少年部에 送致하며(소년부 제4조 2항), 심리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社會化된 節次(Socialized Procedure)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適法節次(due process of law)를 가미하고²⁴⁾ 終局處分으로서의 保護處分은 (1) 個人에의 監護委託, (2) 短期保護觀察, (3) 保護觀察, (4) 施設에의 監護委託, (5) 病院治療所 등에의 委託, (6) 短期少年院 送致, (7) 少年院送致 등이다(同法 제32조 제1항).

「法官에 의한 送致」란 檢事의 기소에 의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된 범죄소년 중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認定되어 少年部로 送致되는 것(同法 제50條)을 뜻하므로 檢事先義主義를 택함으로써 송치절차가 重複·遲延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少年審判에 있어서는 비행소년에 대하여 醫學·心理學·教育學·社會學·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여를 위하여 調査官에 의한 調査와 專門家の 診斷 및 少年鑑別所의 감별결과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第11~12條).

21) 그 개정내용에 관하여 金英蘭, “改正少年法에 대한 一考”, 青少年犯罪研究 第7輯(法務部), 1989, p.227.

22) 實證法上의 명칭은 보호처분으로 되어 있으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구별하기 위하여 강 학상 명칭인 보안처분이라고 한다.

23) 개정의 경과와 주요개정내용에 관하여는 박재윤, ‘우리나라 保安處分制度의 改善方案’, 申東旭博士정년기념論文集, 1983, pp.16~18.

24) 現行少年法은 改正 前보다 適法節次의 堡障規定이 強化되었다.

4. 少年司法制度의 改善方案

우리나라의 少年司法制度는 최근의 少年法改正과 保護觀察법의 制定을 통하여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며, 少年司法制度의 改善方案에 대하여 알아보자.

1) 制度的인 改善方案

(1) 虐犯은 현실적인 犯罪나 非行이 아닌 단순한 비행의 위험성에 불과한데 비행위험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裁判을 받게 한다는 것은 재판의 결과 비록 刑事處分이 아닌 保護處分에 處해진다 하더라도 人身拘束이나 身體自由의 제한이 따르는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檢事先義主義를 택하고 있는 현행법제 아래에서는 비행소년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소년보호주의에 배치될 뿐 아니라 節次의 重複과 處理의 遲延 등으로 人權侵害의 소지도 있으므로 法官先義主義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²⁵⁾

(3) 虐犯少年은 물론 觸法少年에 대하여도 비행사실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少年部에 送致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父母와 教師 및 地域社會 善導委員의 협의 아래 비공식적 制裁를 과하고 사건을 종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運營上의 改善方案

(1) 현행제도하에서도 검사는 비행소년처우의 관념에 충실하여 少年事件을 형사사건화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保護觀察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주저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제 保護觀察이 뒷받침을 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년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비행소년도 이제는 保護觀察所의 保護觀察官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제도화되었으므로 소년부에서도 소년부송치

25) 金箕斗, 韓國青少年犯罪研究, 서울, 博英社, 1991, p.14.

처분의 비율을 더 높임으로써 사회 내 처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青少年犯罪의 증가에 따른 發生推移와 그 原因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處罰보다는 善導와 訓放의 再社會化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늘날 青少年犯罪의 量的 增加와 質的 凶暴化는 그 자체로서도 이미 成人犯罪에 못지 않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凶惡犯과 強力犯의 增加, 集團化, 累犯化, 低年齡化되어 가고 있으며, 대졸자 이상의 학력자도 증가하고 있다. 青少年犯罪의 원인으로 볼 때, 偶發的이고 衝動的인 青少年 行動樣式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어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의한 犯罪의 增加는 심각한 문제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우리의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少年院은 法院의 處分決定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司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적 처우를 행하는 刑事司法의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少年矯導所는 少年 犯罪者를 成人犯罪者와 분리 처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懲役 또는 禁錮刑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少年矯導所에 수용하고, 일선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도 分界된 장소에서 수용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非行을 저지른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學齡期에 있는 青少年이므로 합당한 교육적 노력으로 이들의 성장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少年司法制度의 주된 목적은 非行青少年의 再社會化를 통하여 소년의 健全育成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때에 이 목표관념은 소년경찰과 검사, 그리고 법관, 소년조사관, 감별관이나 교정직이나 보호직, 생생보호회 직원 모두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非行少年을 送致하고 起訴하는 분야에서나 裁判을 통하여 處分을 결정하는 분야 그리고 矯正保護를 하는 분야에서 각각 創意力を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고 相互有機的으로 協力하여야 한다. 각 단계에서의 효과가 實證的으로 분석되어야 하고 그 效果分析은 處遇政策의 修正으로 반영됨으로써 재검토 및 대책의 수정을 거치면서 犯罪學과 刑事政策은 相互補完의으로 發展해나가야 한다.

參 考 文 獻

■ 국내문헌

1) 單行本

金箕斗, 韓國青少年犯罪研, 서울 : 博英社, 1991.

鄭榮錫, 刑事政策, 서울 : 法文社, 1997.

鄭榮錫 · 申洋均, 刑事政策, 서울 : 法文社, 1997.

2) 國內論文 및 刊行物

金箕斗, “少年犯罪의豫防과 善導”, 青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2.

_____, “少年法上의 諸般 問題點과 改善方向”, 青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91.

金秀吉, “우리나라 更生保護制度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社會科學 第20集, 1985.

金英蘭, “改正少年법에 대한 一考”, 青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89.

金麟起, “韓國少年犯罪”, 中央大學校, 1986.

朴在允, “우리나라 保安處分制度의 改善方案”, 申東旭博士停年紀念.

鄭榮錫, “韓國青少年非行의 現況과 그 對策”, 刑事法의 諸問題, 法文社, 1982.

鄭永哲, “少年善導保護制度의 運營現況 및 改善方案”, 青少年犯罪研究, 法務部, 1983.

慎鎮撥, “青少年犯罪의 原因과 對策”, 冠峯 韓錫東博士 古稀紀念論文集, 1982.

崔鍾源, “美國의 少年院制度에 대한 考察”, 法務部, 1991.

矯正協會, 矯正, 1992.

法務部, 少年保護行政便覽, 1994.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89, 1992, 1994.

法制處, 各國의 青少年關係法, 1991.

_____, “최근 各國立法動向”, 1992.

全國檢察少年善導委員聯合會, 善導 第2號, 1996.

韓國刑事政策研究員, 韓國刑事政策研究, 1996.

3. 外國文獻

菊田幸一, 少年法概說, 東京 : 永斐閣, 1980.

擇登後雄, 犯罪者處遇制度法論(上), 東京 : 大成出版社, 1975.

Larry J. Siegl and Joseph J. senna,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 west publishing company), 1994.

Schneider. K. Klinische Psychopathologie, ll, Aufl. 1976.

ABSTRACT

A Study on the Juvenile Delinquency

By Lim, Moung So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in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measures to protect society from juvenile delinquency and bring up of sound juvenility.

This paper studies by means of a literature standing method and statistics analysis with respect condition of juvenile delinquency centering on the recent data.

And I concluded in the final part of this thesis that incessant education, concerns of home, school, society about the youth are the best ways to prevent the juvenile delinquency.